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제출일자 : '96. 6.
제 출 자 : 김동근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96. 4. 15 동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나 심사보조자인 전문가에 대한 위촉활용영역, 자격 및 해촉사유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문가의 활용영역을 과학기술·환경·건설기술 및 의료분야로 정함.(안 제6조의 2 제1항)

나. 전문가의 위촉기간 및 연장방법을 정함.(안 제6조의 2 제2항)

다. 전문가의 자격기준 및 결격대상을 정함.(안 제6조의 2 제3항)

라.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해지 요건을 정함.(안 제6조의 2 제5항)

3. 참고자료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나.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 전문직 공무원규정 별표 가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⑤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2(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 ---------- ---------- ---------- ---------- 이경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신 설 〉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장은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경우 의장은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전문가는 당해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별표 가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 전문직공무원의 봉급한계중 진임 전문직공무원 가목의 한계금액과 그 50퍼센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후 지급한다.	④ ---------- 안건심사 보고서를 ----------
〈신 설〉	⑤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 參考資料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66. 4. 30, 73. 3. 12, 78. 12. 6, 81. 4. 20〉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

구분	자 격 기 준
가	1. 연구·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연구·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5.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가격이 있는 자 6.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9.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지서식〕

심사보조자 위촉요청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조례 제6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안 건 명						
심사보조 대상업무						
심사보조자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위 촉 기 간						
위 촉 이 유						

※ 첨부서류 ① 이력서 1통
② 자격증사본 1매
③ 경력증명서 1통
④ 신원증명서 1통

. .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 ○ 위원회 위원장 (인)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6.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6월 4 일 김동근의원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6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96. 6. 25)상정
심의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근의원)

가. 제안이유

○ 1996. 4. 15 동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나 심사보조자인 전문가에 대한 위촉활동영역, 자격 및 해촉사유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전문가의 활용영역을 과학기술·환경·건설기술 및 의료분야로 정함.(안 제6조의 2 제1항)

○ 전문가의 위촉기간 및 연장방법을 정함.(안 제6조의 2 제2항)

○ 전문가의 자격기준 및 결격대상을 정함.(안 제6조의 2 제3항)

○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해지 요건을 정함.(안 제6조의2 제5항)

3. 검 토 의 견

○ 개정코자 하는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안을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 하였으나 금번에 규정사항을 새로 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음.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 개정된 조례는 전문가 위촉활동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전문가의 활용영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촉기간 및 연장 방법, 자격기준과 결격대상, 위촉해지 요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음.

○ 따라서 본 안건은 당초 개정취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